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3063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수준 높은 공연예술
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나. 이에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
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
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3) 필 요 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
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
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나.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- 1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 모 : 건물 2,043.58 m^2
- 3) 소요예산 : 23,713백만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성희제 (☎ 2133-2527)